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6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2. 4.
4. 회부일자 : 2020. 2. 12.

II. 개정이유

- 2020년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

III. 주요내용

1.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7)
 - 신설: 1개원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서울청림유치원(관악구 청림5길 22)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별첨 4〕)
 -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20.1.10.~1.20.)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4]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67호로 제출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일자로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학교신설의 건은 관악구에 위치한 사립의 은비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 단설의 청림유치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매입형 유치원은 금년 4월 1일에 개교될 예정인바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동 유치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12월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는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의 신설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같이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림유치원 신설의 건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최종심의 과정에서 청림유치원 신설 예산의 삭감은 현재 재원 중인 유치원 학부모들의 혼란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신설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심의 를 부대조건으로 편성된바 있습니다.
- 따라서 금번 동 조례안에 제출된 청림유치원 신설의 건은 예산심의

시의 부대의견을 준수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특별한 절차적 하자는 없으며,

특히 입법예고 결과 청림유치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교명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 및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청림유치원 신설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매입형 유치원 교명 심의 결과

학교명	가칭 학교명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청림유	청림유	청림유	2019.9.5.	청림유	2019.9.20.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